

1. 개정이유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등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요원 분할복무 신청시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안 제41조의2)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지요원이 제출해야할 서류 중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

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46조의4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통지 및 연기 서식 마련(안 제46조의7 및 별지 제18호의5서식 신설, 안 제46조의8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신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통지서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

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세부사항 병무청장에게 위임(안 제79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세부 사항을 병무청장

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

마.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108조의2,
안 별지 제132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취소신청 민원의 증가에 따른 취소신청서 제출근거 및
서식 마련

바. 기타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기관”을 “병무용”으로 한다.

제46조의4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5장제1절의2에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7(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에 대한 통지서는 별
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8(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
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예술·체육요원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교
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
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법무·수의사관
후보생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4호 중 “지급합니다”를 “지급하며 세부 품목은 각 군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부 물품은 입영 시 지참이 불가할 수 있으니 지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입영부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이 불가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별지 제18호의5서식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8호서식, 별지 제115호의2서식,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147호서식 및 별지 제14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관	처리기간	즉시
신청서 종류	[] 병적증명서([] 한글, [] 영문) [] 병역증 재발급 [] 전역증 재발급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 영문증명서 신청자만 기재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군별	군번	계급	전역(소집해제)일자
용도	[] 공직자 등 신고 [] 입영(소집) 사실 확인 [] 경력 확인 [] 취업 [] 시험 응시 [] 보훈대상자 등록(안장심사용 포함) [] 기타 ()			
병적증명서 신청 내용	[] 군(대체)복무를 마 치지 않은 사람	■ 처분사유 또는 질병명 [] 기재 [] 미기재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처 분사유 및 질병명·심신장애 내용인 경우 선택		
	[] 군(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① 군 별 [] 기재 [] 미기재 ② 군 번 [] 기재 [] 미기재 ③ 계 급 [] 기재 [] 미기재 ④ 복무분야 [] 기재 [] 미기재 *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 복무한 경우에 한함 ⑤ 복무계급 [] 기재 [] 미기재 *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양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 복무한 경우에 한함 ⑥ 병과(특기) [] 기재 [] 미기재 ⑦ 전역구분(사유) [] 기재 [] 미기재 ⑧ 역 종 [] 기재 [] 미기재 * ‘공직자 등 신고용’, ‘보훈대상자 등록용’은 별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입영(입관, 소집)일자 및 전역(소집해제)일자는 기본항목으로 기재하여 발급		
그 밖의 발급 요 구사항	* 상단의 신청 내용 이외에 군경력 등 요구사항 기재		발급매수 [] 매	

위와 같이 병역증서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인 지참물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1. 증명사진(2.5cm×3cm) 1매[전역증 재발급 시]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 아닌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이나 전시근로역, 병역이 면제된 사람 또는 대체역 소집면제·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병역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m²]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구분	[] 재신체검사 []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지내역	신체검사 일시	년 월 일(시 분)
	신체검사 장소	○○병역판정검사장(○○시·도 ○○시·군·구 ○○읍·면·동)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제15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준비사항	재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주민등록증, 병역증, 필기구, 기타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 등
참고사항	※ 질병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1. 수술(입원)한 경우: 수술(입원)기록지, CT필름, X선필름 등 2.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검사기록지 3. 장기간 치료한 경우: 치료기록지 4. 뇌전증, 정신병의 경우: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또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재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병적지	
	주소	
통지내역	신체검사 일시	년 월 일(시 분)
	신체검사 장소	○○병역판정검사장(○○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령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제15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재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은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한 사람은 이를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3.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와 이 통지서를 대리수령하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예술·체육요원 교육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교육과정명	복무기본교육 / 직무교육	
교육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분야(「예술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6조 및 별표4에 따른 해당분야 기재)	
교육통지	교육일시(교육시간)	
	교육장소	

「병역법」 제33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0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병무청 과 전화번호 :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교육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33조10제2항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4호에 따라 경고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무기본교육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직무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예술·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

※ 교육연기 신청사유의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관	복무분야	
	소집일	전화번호	
	주소		
연기대상 및 기간	교육구분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육과정명	교육예정기간
	연기신청기간 20 . . . ~ 20 . . . ()일간		
교육연기 신청사유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20에 따라 위와 같이 예술·체육요원 교육일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연기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 80g/㎡]

공익복무 실적부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복무사항	소집(편입)일		소집해제(복무만료) 예정일		
	복무기관	복무분야		복무형태	
공익복무 실적 및 내역 * 여백 부족시 별지작성 가능.					
공익복무 횟수				총 공익복무 시간	
기간	인정시간	분야	공익복무 내용	대상기관(장소)	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 현역장교 등 지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원분야	[]의무 []법무 []군종 []수의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학교명 또는 수련(연수)기관명			
	입학 연월일		졸업·수료예정 연월일	

「병역법」 제34조, 제34조의6, 제34조의7 및 제58조에 따라 현역장교 등 복무를 지원하며,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단서 및 제118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도
지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병무청장 귀하

지원자 제출서류	1. 신원진술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 1부(자격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뒤쪽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의무 []법무 []군종 []수의 [] 기본병과) 장교의 현역입영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관계	
주 소		
입영부대		
모이는 장소	입영일시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하여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입영일 연기원 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재신체검사원)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기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입영하시더라도 입영 후 군 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귀가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입영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입영 시 유의사항
 - 가.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나. 입교 시 두발 및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은 「입교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입영하기 전 건강관리 및 귀가
 - 가.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입영 후 7일 이내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됩니다.
 - 치유기간 3월 미만 : 치유기간이 지난 후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조치
 - 치유기간 3월 이상 또는 치유기간 없음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즉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제출안내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의2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의2서식]

외국 교육기관 재학사유 입영연기신청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병역사항	[]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 기타()		
확인사항	학교명	학제	
	학교주소		
	입학일자	졸업예정일자	
	전공학과		
	이수과정 [] 2년제 대학 [] 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대학원(2년 과정) [] 대학원(2년초과 과정) [] 박사과정 [] 기타_____		
	현재 재학 중인 학년		
원격수업 수강 기간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입영 등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첨부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퇴학·제적 등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병역법시행령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연기 여부 결정 지방병무청장	→ 통지 지방병무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앞쪽)

구 분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병역처분 변경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대상자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예비군대체복무소집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군사교육소집, 복무 중) []예비군 []기타()		
신청내용	병역 감면 등	[]복무기간 단축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국가유공자
		[]보충역 편입 신청	[]국가유공자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수형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수형자 []중학교 중퇴 이하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귀화자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병역면제 신청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신청	[]생계유지곤란 사유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고아(아동양육시설 등 5년 이상 재원 포함)
	복 무 희 망	[]병역처분 변경 신청	[]질병치유 []장애인 []국외이주자 []고아 []귀화자 []학력변동 () []북한이탈주민 - 현역[], 사회복무[] 희망 : 년 월 일 []법 제65조제8항제1호(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현역 희망)
		[]신체검사 장소 선택	[] 실거주지 (소재지 :) - [] 학생 [] 학원수강생 [] 직장인 [] 기타 [] 주민등록지 [] 병역판정검사 시 관할 지역

「병역법」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생계유지곤란 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병무용진단서 1부(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 일반/집합 건축물 대장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 등본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 증명 서류 12. 사업자등록증 13. 폐업사실 증명 서류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0.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국가유공자(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인 등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수형자(6개월 이상 형을 받은 사람)	판결문 사본 1부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시·군·구·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고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 판결문 사본 1부 2. 병무용진단서 1부(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허가서 사본,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중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병무용 학력증명서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질병이 있는 사람, 질병이 치유된 사람	병무용진단서 1부	없음	
실거주지 등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학교 재학, 학원 재원, 재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학력이 변동된 사람	학력증명서 1부	없음	
북한이탈주민(「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를 √표 체크한 후 병역의무자란에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자신의 병역사항 및 병역복무 변경 및 면제 종류(복무기간 단축, 보충역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대체역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병역처분변경) 중 해당 사유에 √표 체크하십시오.
- 신청일, 신청인, 의무자와의 관계를 적은 후 서명해 주십시오.
- 유의사항
 - 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하기 위해 귀하 및 귀하 가족에 대한 재산과 수입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 나. 「병역법」 제65조 제8항 제1호에 해당되어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이 현역으로 처분된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현역신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 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병역감면이 제한됩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 아래 구분란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생활가정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시설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신고번호 제 호(년 월 일)				
	소재지				
보호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년 월)				
입소사유					
부모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그 밖의 사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본 시설에 보호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위 보호기간 중 본 시설에서 부 또는 모와 거주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부 또는 모와 거주하였을 경우 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3. 위 부모가 본 시설에 보육사, 취사원, 시설운영원 등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 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재직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년 월)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으로 본 시설에 5년 이상 보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장 직인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	------	------	-----------------------------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국내	국외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인
------------------------	--	----------

최초 허가 신청	당초 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 . ~ . . . (년 월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국외체류 중 인 자 기간연장 허가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최초 허가사항	여행 목적	여행국명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병무청 허가기간	20 . . . ~ 20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 신청	체재목적	체재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일간)	

허가 취소	취소 일자 :				
-------	---------	--	--	--	--

국내 가족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병역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 법인의 추천서	없음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없음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없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음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없음
질병치료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	없음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없음
국외이주의 경우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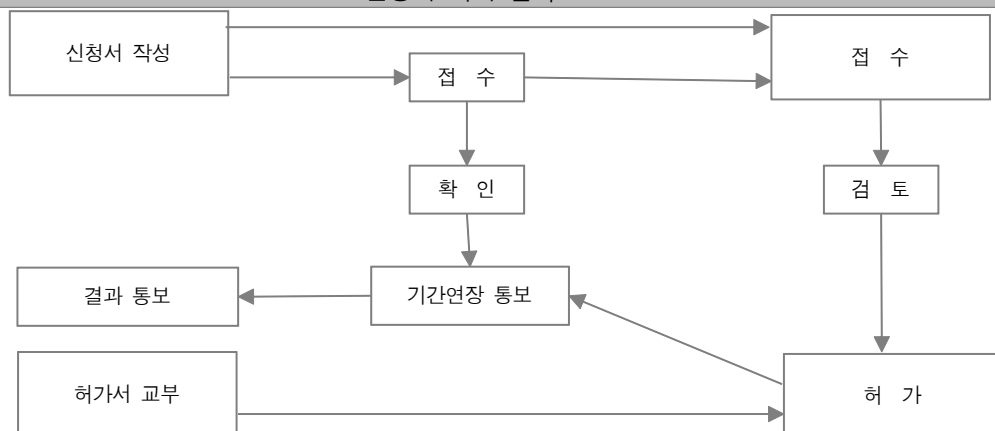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제재내역
 - 공무원 및 임직원의 임용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40세까지)
 - 국외여행허가의 제한
-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서 처리 절차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고발장**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고발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발내용 등	범죄사실	
	소명자료	
	비고	

끝.

기 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 전화상담 ☎ 1588 - 9090

○ 사이버상담 : <http://www.mma.go.kr>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

귀하의 병역의무 기피사실을 「병역법」 제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병역의무 이행시 공개제외 예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법 위반사항	기피일자		병역법 위반조항	
	기피요지			
공개사항	공개내용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조항		
	공개예정일			
	공개방법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유의사항

만약 귀하께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첨부된 소명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귀하의 병역의무 기피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 소명서 1부. 끝.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 ----- ----- ----- ----- <u>제출해야</u> ----- -----.
1. <u>의료기관</u> 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u>병무용</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4(예술·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u>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u> 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4(예술·체육요원의 명부 등) ----- ----- ----- ----- <u>공익복무</u> ----- -----.
<u><신 설></u>	<u>제46조의7(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u> 영 제68조의20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u>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에</u>

<신 설>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5 서식에 따른다. 제46조의8(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예술·체육요원은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08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	--